#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의 명확화 관련 특별약관

## 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이 특별약관은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아래 열거한 특별약관(이하「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」이라 합니다)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부가된 유효한 계약에 적용됩니다.

**< 「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」 >**

| 구 분 | 특별약관 명칭 |
|---|---|
| ①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보장 | ·중과실 교통사고피해 사망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<br>·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(6주이상)치료지원금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<br>·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(4주이상)치료지원금C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<br>·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(6주이상)치료지원금C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<br>·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C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 |
| ②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 관련보장 | ·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피해 사망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<br>·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피해 부상(6주이상)치료지원금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<br>·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C(운전자용/비운전자용) |

## 제2조(피해자의 정의)

① 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보장에서 피해자라 함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, 법원의 판결문, 검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 통지서(죄명 및 가해자(피의자)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) 등에서 확인되는 '중과실 교통사고'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.

② 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 관련보장에서 피해자라 함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, 법원의 판결문, 검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 통지서(죄명 및 가해자(피의자)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) 등에서 확인되는 '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'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.

③ 피보험자가 '중과실 교통사고' 또는 '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'의 **상호과실로 인한 가해자(피의자)인 경우에도, 제1항 내**

**지 제2항의 '피해자의 정의' 에 해당**되면 「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」 약관의 **피해자로 봅니다.**

## 제3조(중과실 교통사고 등의 정의)

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에서 정한 '중과실 교통사고' 및 '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'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합니다.

1.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보장

| 특별약관 적용 전 | 특별약관 적용 후 |
|---|---|
| 제0조(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)<br><br>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(이하 「기소」라 하며,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)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. | 제0조(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)<br><br>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(이하 「기소」라 하며,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)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. |
| (신 설) | 단,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봅니다. |
| 1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([별표-상해관련1] 참조)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<br>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)에 해당되는 사고<br>3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| 1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([별표-상해관련1] 참조)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<br>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)에 해당되는 사고<br>3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|
| 제0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<br>3.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,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| 제0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<br><br>3.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,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|
| (신 설) | 단, 가해자 사망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중과실 교통사고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합니다. |

## 2.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보장

| 특별약관 적용 전 | 특별약관 적용 후 |
|---|---|
| 제0조(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의 정의) | 제0조(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의 정의) |
|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(이하 「기소」라 하며,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)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. | 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(이하 「기소」라 하며,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)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. |
| (신 설) | 단,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봅니다. |
| 1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([별표-상해관련1] 참조) 제2항 단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<br>가.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(遺棄)하고 도주한 경우, 같은 죄를 범하고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(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<br>나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사고<br>다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고 | 1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([별표-상해관련1] 참조) 제2항 단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<br>가.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(遺棄)하고 도주한 경우, 같은 죄를 범하고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(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<br>나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사고<br>다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고 |
| 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)에 해당되는 사고 | 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)에 해당되는 사고 |
| 3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| 3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|

| 특별약관 적용 전 | 특별약관 적용 후 |
| --- | --- |
| 제0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<br>3.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,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| 제0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<br>3.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,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|
| (신 설) | 단, 가해자 사망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교통사고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합니다. |

## 제4조(준용규정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**「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」**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